

대전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가단11873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가액배상청구)]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피고B

변론 종결 2020. 12. 2.

판결 선고 2021. 1. 1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8. 8. 24.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은 20,6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

1)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가소326513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7. "피고(C)는 원고에게 5,888,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7. 24.까지는 연 17%, 2007. 7.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2) 2019. 6. 14.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은 22,563,527원(= 5,888,186원 + 2003. 10. 25.부터 2007. 7. 24.까지 연 17%의 이자 3,754,404원 + 2007. 7. 2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이자 9,646,945원 + 2015. 10. 1.부터 2019. 6. 14.까지 연 15%의 이자 3,273,992원)이다1) .

나. C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8. 24.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인 E, F, 피고, C(각 법정 상속지분 1/4 지분)가 있다.

2) C를 비롯한 위 공동상속인들은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위 분할협의를 따라 2019. 5. 23.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2019.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G조합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61,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9. 9. 17. H 앞으로 2019. 8.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78,800,000원이고, 2020. 9. 29. 기준으로는 82,600,000원이다.

2)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에게는 2,470,000원 상당의 자동차(I 주식회사 명의로 2,500,000원 단독저당권 설정되어 있어 일반 채권자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없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 I 주식회사에 대한 1,970,000원 채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 감정인 J, K의 각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L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나 다를 바 없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 1/4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피상속인인 망인을 10여 년간 부양하여 왔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한 망인의 유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민법 제1008조의 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통상적인 부양의 정도를 넘어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C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민법 제1065조 내지 1070조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G조합로부터 51,000,000원을 대출받아 C에게 15,000,000원을 분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고). 가액 배상시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가 G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분할협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가액배상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82,600,000원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지분에 따른 공동담보가액은 20,650,000원($=82,600,000\text{원} \times 1/4$)이고, 이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범위 내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자비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이나 처분대금에서 망인의 장례비 14,000,000원, 망인의 진료비 5,902,378원, 망인의 차용금 채무 변제금 11,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상속)취득세 2,351,580원을 부담하였는바, 이러한 비용이나 채무 중 C의 부담 부분 상당은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확정재판에 의하여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가 아닌 이상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20,6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2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길연

별지

1) 한편 원고는 양수금 원금 5,888,186원에 대해 2003. 10. 25.부터 2019. 6. 14.까지 연 17%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15,664,833원으로 계산하여 양수금채권 원리금을 21,553,019원으로 기재한 지연손해금 산출내역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